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8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윤영석 · 김성원
권영진 · 배준영 · 박수영
김형동 · 이인선 · 김정재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,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

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p>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. ③·④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